

의안번호 제127호

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동고동락국장			
제출연윌일	2020. 11. 24.			

참여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(배경·필요성)

○ 평생학습도시인 논산시민이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이용권을 지원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하고, 개인의 역량,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의 토대 마련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'논산 평생학습 이용권' 정의 (안 제2조제5호)
-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추진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방법 (안 제4조의2~제4조의4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1) 「대한민국헌법」제31조
 - 2) 「평생교육법」제16조
 - 3)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제7조의2
 - 4) 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제2항제4호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3) 규제심사 : 대상 아님
 - 4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0. 11. 3. ~ 2020. 11. 23. 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제출의견 없음
 - 5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(041-635-3221)

□ 개정조례안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"논산 평생학습 이용권"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(이하 "이용권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장 번호를 제3장부터 제6장까지로 하고, 제2장(제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

제4조의2(지원대상)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논산시민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사람은 제외한다.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2.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. 다만,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

제4조의3(지원범위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1명 당 연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② 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이용권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.

제4조의4(지원방법) 이용권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이용권으로 발급받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3 및 별표4의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평생교육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평생교육과	1	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	「논산시 평생교육 조례」
	1	및 제출	제4조의4

소	,	관	j	부	ス	न	성		명
입	평	생	亚	육	과	장	0]	재	수
안 자	평	생	학	습	팀	장	서 (74	금 6-57	애 71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1.~4.(생략) <u>〈신 설〉</u>	제2조(정의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"논산 평생학습 이용권"이란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 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(이하" 이용권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(신 설)	제2장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제4조의2(지원대상) 이용권의 지원대 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 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논산시민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.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.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. 다만,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제4조의3(지원범위)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1명 당 연간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 ② 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이용 권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 은 금액은 소멸된다. 제4조의4(지원방법) 이용권을 지원 받

	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・면・동
	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이용권으로
	발급받는다.
제2장~제5장	제 <u>3</u> 장~제 <u>6</u> 장

붙임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4조의3(지원범위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1명 당 연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-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 이상 논산시민
- 나. 추계결과 : 3,000,000,000원
- ◎ 2021년 평생학습 바우처 1인당 연간 100,000원
 - 100,000원 × 10만명 × 30% = 3,000,000,000원
- ※ 10만명: 지원대상자인 만 19세 이상 논산시민 10만명의 30%를 계상했음

3. 작성자

평생교육과장 이재수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F	7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	입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5	7 비						0
7	기 금						0
5	를 비						0
٨	.] H]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세	출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	단체등이전 관에대한보조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재	원 조달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의존	소 계						
재원	보조금						
711 12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자체	지방세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	15,000,000
수입	세외수입						
	공모사업						
,	지방채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(채무부	타 남, 민자 등						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대한민국헌법」

제31조

- ①~④ (생략)
-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

□ 「평생교육법」

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~3 (생략)
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
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

제7조의2(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)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(이하 "평생교육이용권"이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- 3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
- 4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 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,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,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제2항제4호

-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 이 법에서 "기부행위"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1.~3. (생략)

4. 직무상의 행위

가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 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(지방자치단체가 표창·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)

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· 방법 · 범위 등을 구체

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

다.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 내어 행하는 구호행위·자선행위